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위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60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9.

발 의 자 : 김위상 · 권성동 · 조지연
윤한홍 · 김종양 · 김대식
박성훈 · 안철수 · 신성범
김선교 · 송석준 · 김도읍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태양광, 풍력 발전설비 및 재생에너지와 연계되는 에너지저장장치(ESS)의 수명 만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향후 수만 톤 규모의 특수 폐기물이 단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

특히 산지나 농가 등에 분산된 태양광 폐패널, 복합재로 구성된 풍력 블레이드, 재생에너지 설비용 에너지저장장치 등은 환경오염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순환이용 대상에 태양광 패널, 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설비 또는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저장·제어하는 에너지저장장치의 핵심 부품으로서 사용된 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포함하고, 이를 정부의 재정적·기술적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설비, 에너지저장장치 폐기물의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3호다목 및 제41조제1항제4호의2 신설).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태양광 패널, 풍력 블레이드 등 「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설비 또는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저장·제어하는 에너지저장장치(ESS)의 핵심 부품으로서 사용된 것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

제41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태양광 패널, 풍력 블레이드 등 「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설비 또는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저장·제어하는 에너지저장장치(ESS)의 핵심 부품에 대한 사업자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
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
방자치단체, 제44조에 따른 사
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
필요한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이
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
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
다.

1. ~ 4. (생략)

<신 설>

5.·6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4의2. 태양광 패널, 풍력 블레
이드 등 「재생에너지 개발·
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
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
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재생
에너지설비 또는 대용량의 재
생에너지를 저장·제어하는
에너지저장장치의 핵심 부품
에 대한 사업자의 순환이용
촉진을 위한 사업

5.·6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